

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류 안내

수급자격 인정요건	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■ 폐업 사유가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것 ■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폐업사유	■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 ※부양 필요성: 65세 이상 고령, 장애 등 경제활동 할 수 없는 경우 ※친족: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(자기의 직계존비속), 배우자, 기타 친족간 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폐업
준비서류	☐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):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☐ 고용보험 상실처리(근로복지공단) ☐ 고용보험 완납증명서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, 무인민원발급기) ☐ 폐업 사유 확인 서류 ○ 주민등록등본: 전입 신고 후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 이력 포함): 본인, 배우자(또는 부양가족) ○ 배우자와 동거 시 -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○ 친족 부양 시, 부양필요여부 확인서류 - 가족관계증명원(부양가족)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- 진단서 또는 소견서: 진단일, 일상생활·근로가능 여부 기재 ○ 통근시간 확인서류 - 출퇴근 합산하여 3시간 이상 시 가능 - 네이버 길찾기 등 검색 (최적시간 기준) ① 출근시간 (거주지 → 사업장) ② 퇴근시간 (사업장 → 거주지) ○ 의견진술서 - 폐업 사유 관련하여 자필 의견 기재
※ 필요시, 추가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. ※ 진주고용센터 팩스: 0508-8230-0103  진주 고용복지+센터	

수급자격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퇴사(폐업)일자	

위 본인은 사업장 퇴사(폐업)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20 년 월 일

수급자격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 사항 ※

-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,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※ 유의 사항 ※

 -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.
 -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수급자격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,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